#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소 방 청 장

# I

# 시험개요

# 1

### 시험과목

7 8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선택형)
구 분	(총 30명)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인문사회계열	<b>15명</b>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남성 13, 여성 2)	<b>한국사<sup>*</sup>, 영어</b> <sup>**</sup>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b>15명</b>	헌법,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남성 13, 여성 2)	<b>한국사<sup>*</sup>, 영어</b> <sup>**</sup>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sup>\*</sup>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절차	시험절차 장소공고 시험예정일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2. 12. 12.(월) ~ 12. 16.(금) ※ 취소는 12. 19.(월) 18:00까지 가능				
1차 시험	필기시험	′23. 1. 4.(수)	′23. 1. 14.(토)	'23. 2. 7.(화)
2차 시험	체력시험		'23. 2. 14.(화)	′23. 2. 17.(금)
3차 시험	신체검사	'23. 2. 7.(화)	(인·적성검사 및 서류제출)	'23. 3. 14.(화)
4차 시험	면접시험	′23. 2. 17.(금)	′23. 2. 22.(수) ~ 2. 24.(금)	23. 3. 14.(41)

<sup>※</sup>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119고시(119gosi.kr) 누리집에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1 자격 기준일

분야		기준일			
응시 결격사유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3. 2. 24.(금)			
운전면허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23. 1. 14.(토)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3. 2. 24.(금)			
피기나는 데뷔 시기	한국사	'19. 1. 1.부터 '23. 1. 13.까지 취득한 성적표			
필기시험 대체 성적 ※ 4페이지 참고	영어	(성적 사전등록자 <sup>3년</sup> ) '20. 1. 1.부터 '23. 1. 13.까지 취득한 성적표 (성적 사전미등록자 <sup>2년</sup> ) '21. 1. 15.부터 '23. 1. 13.까지 취득한 성적표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3. 2. 24.(금)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23. 1. 13.(금)			
※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이		· ·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한국사, 영어 포함)			

# 2 응시결격 및 복수국적 임용

- 가. (응시결격) 결격사유 해당한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 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4)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나. (복수국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에 제출(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 2)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 3 신체조건

- 가.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 나.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 ▶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을 제출해야 함
  - ▶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함

### 4 응시연령

연령	생년월일	
21세 이상 40세 이하	1982. 1. 1. ~ 2002. 12. 31.	

####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 나이	1세	2세	3세

### 5 운전면허

- 가.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할 것
- 나. 필기시험일까지 발급(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할 것

## 6 가점적용

가. 대상자 및 비율 ※ 가점 관련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최신법령 적용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sup>1)</sup>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b>1개만</b> <b>적용</b>	
<b>의사상자 등</b> <sup>2)</sup>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적용		
자격증 등 소지자 <sup>3)</sup>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b>최대 5퍼센트</b>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2)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나. 가점 방법

- 1)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2) '자격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 신체검사에 적합한 사람에게 적용
- 3) '**자격 등 소지자**'의 자료 제출기한은 **면접시험일까지**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 ☑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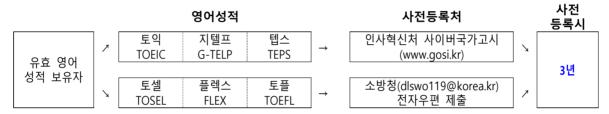
####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가. (개정사항) 영어, 한국사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인정기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 주의사항

- 기준등급 또는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필기시험을 채점하지 않으며 불합격 처리함
- 영어성적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영어성적의 유효 기간만 인정하므로 **사전등록을 권고함**
- 1) (영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사람은 3년 인정 / 미등록한 사람은 2년 인정



2) (한국사) 선발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

#### ② 가점 분야 확대

가. (가점분야) 기존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확대

기조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기존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ᇵᆒ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확대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가점부여) 기존 필기시험 점수에 부여, 변경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

한국실용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글쓰기	대해서만 인정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	<ol> <li>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li> <li>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li> <li>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li> </ol>

#### 기준점수(등급) 이상의 영어성적표(인증서)는 필기시험을 대체하며, 자격 가점으로도 인정함

#### 저격증 등 가산 방법

- 가. (가산방법)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나. (가산한도) 1. 소방업무관련분야, 2. 사무관리분야, 3. 한국어능력시험, 4.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으나 **5퍼센트 이내에서 가능**

### 1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22. 12. 12.(월) 09:00 ~ 12. 16.(금) 18:00
- 나. 접수방법: 119고시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1) 원서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2)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함
    -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하며 21시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 3)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4)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단계 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소지할 것
    - ※ 인적사항 변동 완료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증빙자료 우편 제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우편 30127

#### 다. 서류제출

- 1) 필기시험 대체 성적 및 취업지원가점 관련 서류
  - 가) 대상: 영어, 한국사 성적표(인증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증서
  - 나) 기간: '22. 12. 12.(월) ~ 12. 16.(금)
- 2) 자격증 등 소지자 관련 서류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
  - 가) 대상: 소방업무 및 사무관리 자격증, 한국어 및 외국어 시험성적
  - 나) 기간: '23. 2. 17.(금) ~ 2. 23.(목) ※ 체력시험 합격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기준: 반명함(3cm×4cm), 사진 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 이상)
- \* 원서접수 시 119고시에 등록한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함
- 사진등록: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록 시 불이익 발생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거짓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응시자 서류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방법		
1	운전면허증	'23년부터 소방청에서 일괄 확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응시자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필기시험 응시자 중 성적표 보유자	원서접수 기간 ('22. 12. 12. ~ 12. 16.)	119고시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성적표 미보유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23. 1. 9.~1. 13.)	119고시		
		• 인사혁신처: 토익	, ·	. 13.)까지 사전등록 가능(인사혁신처, 소방청) (TOEIC), 지텔프(G-TELP), 텝스(TEPS) SEL). 플렉스(FLEX). 토플(TOEFL)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 <b>적</b> 표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22. 12. 12. ~ 12. 16.) 추가접수 기간 ('23. 1. 9. ~ 1. 13.)	119고시		
4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22. 12. 12. ~ 12. 16.) 추가접수 기간 ('23. 1. 9. ~ 1. 13.)	119고시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22. 12. 12. ~ 12. 16.) 추가접수 기간 ('23. 1. 9. ~ 1. 13.)	119고시		
6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필기시험 응시자	체력시험 당일 ('23. 2. 14.)	119고시		
7	가족관계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자	체력시험 당일 ('23. 2. 14.)	직접 제출		
0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체력시험 당일 ('23. 2. 14.)	직접 제출		
8	채용신체검사서	추가 신체검사자	면접시험 당일	직접 제출		
9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6] 참고	체력시험 합격자	'23. 2. 17. ~ 2. 23.	119고시		

### 2 응시수수료

- 가. 응시수수료: 7,000원
- 나.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처리 비용은 반화하지 않음
  - ※ 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처리 비용 발생
- 다.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사실 조회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 처리함

### 3 원서접수 결과 및 가점 확인

구분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접수증 출력	○ 일시: <b>원서접수 기간</b>
	○ 내용: 접수증 출력 후 접수번호, 성명, 응시계열, 선택과목 등 확인
	※ 접수증은 원서접수 정상 등록여부 확인용으로 응시표가 아님
이미되지 거리	○ 일시: ' <b>22. 12. 23.(금) 16:00</b>
원서접수 결과 안내	○ 내용: 응시계열 및 성별 응시자 현황
현대	○ 방법: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 게시
	○ 기간: ' <b>23. 1. 4.(수) 16:00 ~ 1. 5.(목) 18:00</b>
가점 확인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 방법: 119고시 [접속(응시자) → 로그인 → 성적조회]

###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합니다.
  - 2) '19.1.1.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기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2)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3. 1. 9.(월) ~ 1. 13.(급)]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합니다.
  - ※ 추가 등록기간까지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사전등록: 【붙임 1】 참고

나. 기준점수

구분	TOEFL 구분		TOEIC	TEPS ('18.5.12.	G-TELP	FLEX	TOSEL
	PBT	IBT		· 이후 시험)			
기준점수	490 이상	58 이상	625 이상	280 이상	50 이상 (level 2)	520 이상	550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사전등록자) '20.1.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사전미등록자) '21.1.15.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토셀 (TOSEL),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에 한하며,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4)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1)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119고시에 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3. 1. 9.(월) ~ 1. 13.(급)]에 반드시 등록 (119고시)해야 합니다.
- 2)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함. (여권 사본 첨부)
- 3)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 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 상자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플렉스(FLEX)는 국가 공인을 받은 「듣기 및 읽기」 평가만 해당합니다.

## 6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23. 1. 13. 18:00)까지 기준점수(등급)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채점하지 않으며 불합격처리합니다.
- 나.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는 필기시험 성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 전까지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라.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할 때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방법

### V

### 1 1차 시험: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23. 1. 14.(토) 10:00 ~ 11:40 (10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장소공고: '22. 12. 21.(수)

1) 응시표 출력: '23. 1. 5.(목) 14:00 ~

※ 119고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다. 시험문항: 100문항(과목당 25문항)

라. 시험과목: 4과목(필수 2, 선택 2)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발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인문사회계열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1-1 출제문제 공개 및 문제문의

가. 답안공개: '23. 1. 14.(토) 16:00 / 119고시

나. 문제문의: '23. 1. 14.(토) 16:00 ~ 1. 15.(일) 24:00

※ 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문의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1) 방법: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작성 후 119고시에 등록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문제문의 → 문제문의서 첨부

2) 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1-2 필기시험 점수 공개 및 이의제기

- 가. 점수공개 일자: '23. 2. 1.(수) 14:00 / 119고시
- 나. 이의제기 기한: '23. 2. 1.(수) 14:00 ~ 24:00
  - ※ 119고시 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 다. 이의제기 방법: 필기시험 점수 이의제기 서식에 맞게 작성 후 119고시 등록
  -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 문의(이의제기)

점수	1. 응시번호 2. 응시자 성명
이의제기	3. 사전 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가점 00)
서식	4. 본인 채점점수(A과목 85, B과목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가점 00)

라. 이의제기 답변: '23. 2. 3.(금)까지

## 1-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가. 합격자 공고
  - 1) 공고일시: '23. 2. 7.(화) 14:00
  - 2)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 나. 합격자 결정: 총 64명(계열별 선발예정인원의 남자 2배수, 여자 3배수)
  - 1)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 2)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구분	남성(2	2배수)	여성(	3배수)	남성(2배수)		여성(3배수)	
	선발인원	필기합격	선발인원	필기합격	선발인원	필기합격	선발인원	필기합격
인원	13	26	2	6	13	26	2	6

### 2 2차 시험: 체력시험

가. 시험일시: '23. 2. 14.(화)

09:00 ~ 12:00 서류제출 / 인적성검사 13:00 ~ 18:00 체력시험

나. 장소공고: '23. 2. 7.(화) 14:00

다. 응시표 출력: 체력시험 장소 공고일에 응시표 분실자만 출력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라. 대 상 자: 필기시험 합격자

마. 시험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바. 평가배점: 총점 60점(종목별 10점 만점)

사.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4 적용

### 2-1 도핑테스트

가. 일 시: '23. 2. 14.(화) ※ 체력시험 종료 후 시료 채취

나. 장 소: 체력시험 장소

다. 대 상: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라. 시료검사: 소변(90ml) 채취 후 전문검사기관 의뢰

마. 동의서 징구: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행위자 조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합격은 취소함

### **2-2**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3. 2. 17.(금) 16:00

나.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다. 합격기준: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3 3차 시험: 서류전형 / 신체검사

### 가. 서류제출

- 1) 제출일자: '23. 2. 14.(화) 09:00 ※ 인·적성검사 등록 시 제출
- 2) 제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3)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②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4) 제출방법: 체력시험 및 인·적성검사 당일 시험운영본부로 제출
- 나. 신체검사서 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 1) 제출일시: '23. 2. 14.(화) 09:00 ※ 인·적성검사 등록 시 제출
  - 2)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3)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전일 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우편 30127

- 4)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5) 합격발표: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

####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 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 색신 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4 4차 시험: 면접시험

## 4-1 인적성 검사

가. 시험일시: '23. 2. 14.(화)

09:00 -	- 12:00	서류제출 / 인적성검사
13:00 -	- 18:00	체력시험

나. 장소공고: '23. 2. 7.(화) 14:00

다.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라. 검사방법: 체력시험 전 검사(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4-2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23. 2. 22.(수) ~ 2. 24.(금) / 09:00 ~ 18:00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8: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장소공고: '23. 2. 17.(금) 14:00

다. 시험대상: 체력시험 합격자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라. 면접방법: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블라인드 면접으로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미수집

면접단계	평가요소	평가점수(60점)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 능력	10점
1단계 (집단면접)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10점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개별면접)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 정신	10점

마. 응시표 출력: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에 응시표 분실자만 출력

### 바. 합격자 결정

- 1) 1단계(집단면접) 평가점수와 2단계(개별면접)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2)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5개의 평가요소 중 1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로 평가한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5 5단계: 최종합격자 결정

### 5-1 최종합격자 공고

- 가. 공고일시: '23. 3. 14.(화) 14:00
- 나. 공고방법: 119고시·소방청 누리집 게시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 필기시험 50% + 체력시험 25% + 면접시험 25%에 가점을 반영한 성적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라. 합격증명서 발급
  - 1) 발급일자: '23. 3. 15.(수) ~ '24. 3. 29.(금)
  - 2) 발급대상: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
  - 3) 발급방법: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출력)

### 5-2 최종합격자 교육

- 가. 교육장소: 중앙소방학교
- 나. 교육기간: '23. 3월 ~ '24. 3월(1년)
- 다. 입교유예: 병역의무의 수행, 부상,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등 교육훈련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

### 1 공통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 응시표 출력 후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

-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2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불합격 처리)
-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 (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2 원서접수

-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에 거짓 사진 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나.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
- 라.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파일 등록)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 바.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 사.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큐넷(www.q-net.or.kr/☎1644-8000)
- 아.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확인 여부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3. 1. 13.)까지 유효하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원서접수 전 응시자 준비사항

- ①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록증(해당자)
  - , 응시자가 의사상자 본인인 경우: 의사상자 등록증
  - └ 응시자가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의사상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 자. 가산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

### 3 필기시험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라.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 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
- ▶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훼손한 경우
-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② ③

-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 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테블릿 PC 등
  -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사.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

####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례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시험지(문제지, 답안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

- 1. (대 상) <mark>필기시험 응시자</mark>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고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진키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된 응시자
  - ③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 ④ 발열 또는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 2. (신청기한) '23. 1. 13.(금) 18:00까지
  - ※ 신청기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3. (신청방법) ① ~ ③ 순차 실시
  - ① 소방청 담당자에게 자진신고(044-205-7294)
  - ② 지자체 보건소에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통보
  - ③ 제출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4. (제출서류)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③ (확진자) 의사 소견서
  - ④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통지서
  -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방역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일반시험실 입실이 제한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마스크는 KF94 동급 이상을 사용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
  -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하시고, 분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참고

#### 【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

-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시험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 신청기간: 시험단계별 공고문 참고
- ▶ 신청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담당자(044-205-7294)
- ▶ 신청서류: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의사소견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 마.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 사항(첨부)"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지켜봐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4 체력시험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핸드링 등)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
  - ※ 체력시험 응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 다.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바.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졌을 때 포함) 그 해당 종목에만 측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시점은 시험 당일로 하며 시간은 시험본부에서 결정합니다.
- 사.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 아. 체력시험은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 물·음료는 개인 지참(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 자.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차.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 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카.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 촬영 동영상은 시험 종료 후 삭제합니다.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타.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파. 체력시험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 종목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 (왕복오래달리기는 마스크를 벗고 응시)

- 가.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 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 (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사.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 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 되어야 합니다.
- 아.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서류전형 접수기간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전 소방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 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6 서류제출 및 인·적성 검사

- 가. 인·적성 검사 관련 검사일시, 검사장소, 검사방법, 준비물, 진행방법 등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가능)만 인정합니다. 거짓,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 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라.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면접시험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나. 면접시험의 세부 운영 방법(집단면접 및 개별면접)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라.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가주합니다.

- 바.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이석 등 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사.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와 주민등록초본을 면접시험 등록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소방 공무원임용령」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8 최종합격자

-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합니다.
- 다.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소방위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 라. 소방위로 임용된 후 1년간의 필수 보직기간에는 시도 소방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 및 119고시(www.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 ~ 7294
  - ※ 원서접수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SE코리아, 070-4290-9611

### 1. 사전등록 필요성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소방청에서 인정하는 유효 기가(3년)보다 짧음.
-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 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 확인이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 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전등록 한 영어성적만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2. 보유성적별 사전등록 방법

아래의 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 토익(TOEIC), 지텔프(G-TELP), 텝스(TEPS)

- 등 록 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누리집 (www.gosi.kr)
- 등록방법
- ① 회원가입 → ② 마이페이지 → ③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 ④ 영어/외국어 성적 등록 → ⑤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
- 2 아래의 영어성적을 보유한 자

### 토셀(TOSEL), 플렉스(FLEX), 토플(TOEFL)

- 등 록 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등록방법: dlswo119@korea.kr 전자우편 발송
  - ▶ 제출서류를 전자우편 발송 후 소방청 인재선발계 ☎ 044-205-7289 확인 전화 요청
- 제출서류
- ① 영어성적 사전등록신청서 [서식1] ② 영어성적표 ③ 인적사항 정정신청서(해당자, 서식2)
- ▶ 성적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①, ②)를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영어성적 등록기간

○ 영어성적 사전등록은 연중 상시등록 가능하며 보유성적별 등록방법을 참고 (단, 시험 시행기관별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4. 안내사항

- 유효한 영어성적 보유자는 사전등록이 가능하오니, <mark>영어성적 만료 전</mark> 반드시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이전에 사전 등록한 영어성적도 인정(소방청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규(정기)시험의 성적만을 인정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가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영어성적**은 해당 시험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가(2년)**만을 인정**하며 영어성적 사전등록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자 및 영어성적표 및 등록신청서 제출자의 경우 **영어성적**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의) 사전등록하지 않은 영어성적표의 원본 및 사본을 보유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 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에 영어성적 사전등록한 사람의 경우
  - '등록내역 / 조회결과' 에서 정상 등록되었는지 개인별 확인
  - 기타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영어성적 사전등록에서 확인
- 본 안내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 적용 7일 전까지 소방청(http://www.nfa.go.kr) 및 119고시(http://119gosi.kr)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사전등록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044-205-7290 / 부재시 044-205-7287~7294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제44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 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	PBT 490점 이상
토플 (TOEFL)	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IBT 58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28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55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sup>\*</sup>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이란 시험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정상 조회 가능한 점수를 말함

### 참고 2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영어성적 등록 절차 안내

# 1 회원가입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 2 마이페이지

홈 | 로그아웃 | 시험종합안내 | 온라인 민원 | 사이트맵 |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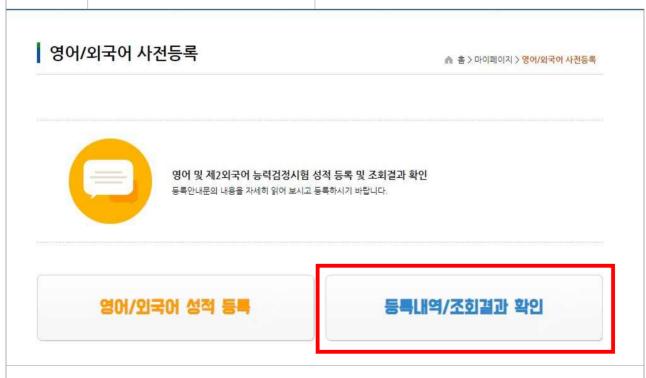
채용후보자	시험통계/자료실	마이페이지
록안내	■한 눈에 보는 시험통계	■원서제출 내역
내용후보자 등록	■시험별 통계	■정답 이의제기
채용후보자 등록확인	■연도별 시험계획 공고문	■합격/성적 조회
임용유예 신청	■증명/서식	■성적사건공개/이의제기
임용유예 신청확인	■동영상	■2차 답안지 열람 신청
임용포기 제출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임용포기 제출확인		■편의지원 사전신청
부처배치 서류제출		■관심 시험
		●중빙서류 제출
		■개인정보수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클릭

#### 영어성적 등록 3







-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을 통해 본인 영어성적이 정상적으로 사전등록 되었는지 개별 확인

# 영어성적 사전등록 신청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성명(영어) (ex. Hong, Gildong)	전 화 번 호	

# 2. 시험관련 내용 \* 보유중인 영어성적만 기입

○ 플렉스 (FLEX)

구 분	듣기/읽기 점수	합격일 (숫자8자리)
플렉스		

### ○ 토셀 (TOSEL)

구 분	시험 회차	응시일자	취득점수
토셀			

### ○ 토플 (TOEFL)

구 분	등록번호 (16자리 숫자)	응시일자	취득점수
토플			

### 3.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

○ 제출한 영어성적에 대한 해당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요청만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확인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귀하

# 인적사항 정정신청서

# 1. 접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기타 연락처:	

### 2. 정정신청 내용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정정사유

[내용 기입]			

## 4. 첨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귀하

